

工業所有權審判事例

實用新案 登.. 無効

〈大法院 第3部 判決〉(1986. 10. 14)

事件番號 : 86 후 10 裁判長 : 정 기 송 關與法官 : 김 달 식 · 박 우 등

1. 審判請求人(被上告人) : 정태영(안양시 안양 7동 204-15)
2. 被審判請求人(上告人) : 송기정(서울 종로구 동숭동 201-27)
3. 原審決 : 特許廳 1985. 12. 17字, 1984年 抗告審判(絕) 第265號 審決
4. 主文 : 原審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特許廳 抗告審判所에 還送한다.
5. 理由 : 上告理由를 判斷한다.

原審決理由에 의하면 原審은 審判請求인의 이 사건 實用新案登録考案(이하 登錄考案이라 한다)과 갑제 1호증(日本國 소화 55 (1980) 4.8. 公開實用新案公報 소 55-52704)의 引用考案을 비교하여 보면 引用考案에서는 형광등 장착케이스(30)가 형광등(50)이외의 電氣部品을 덮는 카바(40)와 결합한 결합부(32')를 구비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사건 登錄考案은 형광등 램프를 접속하는 접속구의 양측에 합설(6)(7)을 형성하여 안정기(2)와 전원접촉램프(3)를 기구의 양단에 나누어 설치하고 안내패지터(8)에 밀봉캡(9)(10)을 접동되게 장착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그 技術的 구성이 동일한 것이라 인정되고 또한 그와 같은 구성으로 인하여 전원접촉램프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형광등 기구의 두께를 얕게 할 수 있어 실용적인 효과가 있는 점도 양자同一하다고 전제한 다음 登錄考案에서 형광등 기구의 양단에 형광등 이외의 電氣部品인 안정기 및 전원접촉램프를 설치하되 이를 덮는 카바(9)(10)를 안내패지터(8)에 접동되게 장착한 技術的 구성은 그 出願前에 引用例에 의하여 公知된 것이므로 登錄考案은 登錄될 수 없는 것이 잘못 登錄된 것이어서 그 登錄은 無效임을 명할 수 없다고 判斷하였다.

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實用新案公報(제1 십갑 제1호증)의 기재에 의하면 審判請求인의 이 사건 實用新案登録請求의範圍는 “形광등의 안정기(2)와 전원접촉램프(3)를 부착하여 되는 천정부착식 형광등(1)을 구성함에 있어서 형광등램프(4)를 접속하는 양측접속구(5)의 양측에 합설(6)(7)을 형성하여 내면에 형성된 안내패지터(8)에 패션접통체 밀봉캡(9)(10)을 장착시켜 되는 천정부착식 형광등”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

명백하고 또 審判請求인의 登錄考案과 위 갑 제1호증의 引用考案을 비교하여 보면 원심인정과 같이 양자 모두 형광등 이외의 전기부품을 카바도 씌우고 위 카바를 정착시키기 위한 턱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同一하나 登錄考案에는 형광등의 양측 접속구의 양측에 형광등 이외의 電氣部品인 안정기와 전원접촉램프 등을 나누어 설치할 수 있는 합설이 마련되어 있는데 대하여 引用考案에는 그와 같은 합설이 없고 다만 형광등접촉케이스의 하부 또는 상부에 형광등 이외의 電氣部品을 덮는 카바가 있을 뿐이어서 그 결과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登錄考案은 형광등의 두께가 얕게됨으로써 실내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考案되어 있으나 引用考案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登錄考案과 引用考案과는 그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작이 표현하는 기술사상에 있어서同一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품의 사용가치를 고양하게 하는 범위와 그 수단 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登錄考案과 引用考案이同一한考案이라고 볼 수도 없고 나아가 이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引用考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登錄考案을 創案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.

原審이 이 사건 登錄考案은 引用例에 의하여 公知된 것이라는 취지로 判斷하여 登錄考案의 登錄이 無效라고 判斷한 조치는 쟁점법칙을 어긴 사실오인과 實用新案에 있어서의 公知와 進歩性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理由 있다.

이에 原審決을 破棄하고 사건을 原審法院에 還送하기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. <略>